

사단법인 한국국제사법학회
제162회 정기연구회 자료집



일 시 : 2023. 11. 30.(목) 19:00 - 21:00

장 소 :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

제162회 정기연구회

사회 : 총무이사 이종혁

- | | |
|---------------|-----------------------------|
| 19:00 | 개회사
노태악 대법관(한국국제사법학회 회장) |
| 19:00 - 20:15 | 발 표
김재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안시) |
| 20:15 - 20:30 | 지정토론
이상협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
| 20:30 - 21:00 | 전체토론 |

발표문

책임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김재환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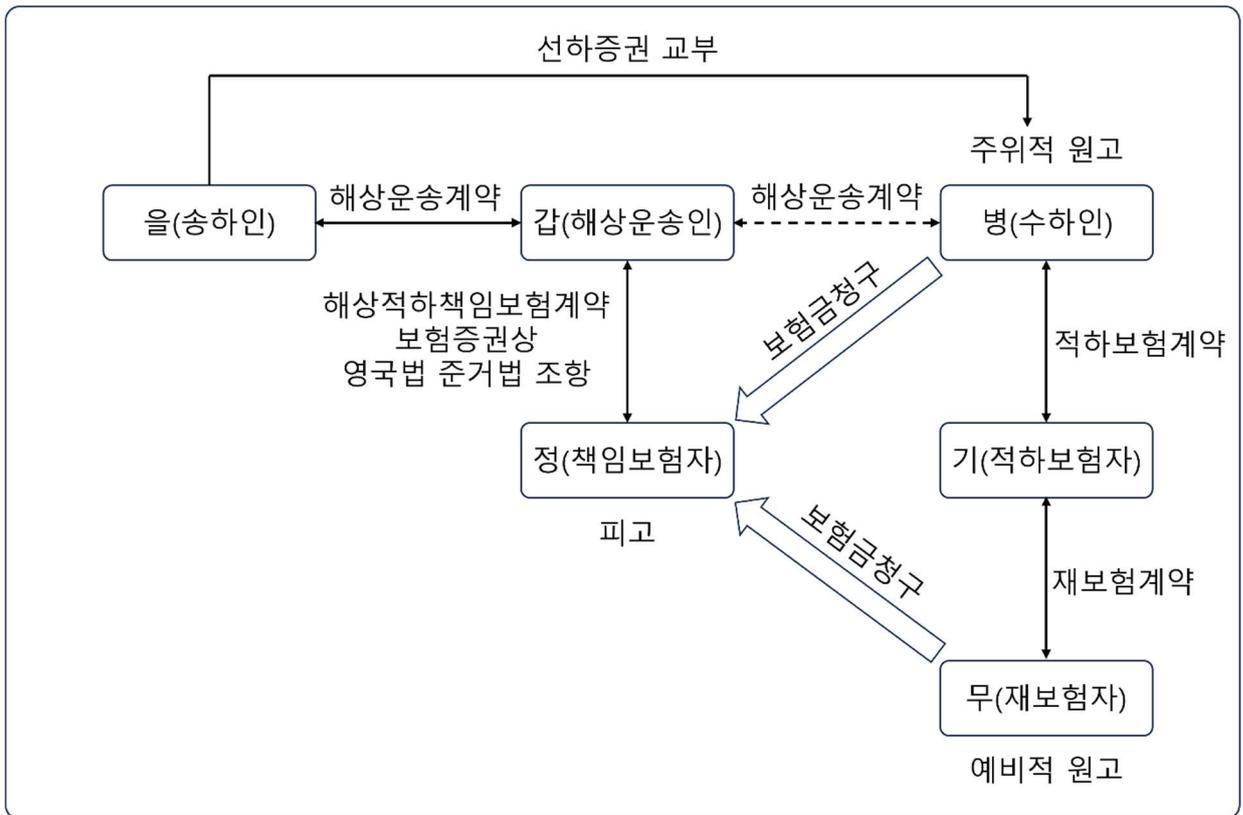
책임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변호사 김재환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내국법인인 해상운송인 갑은 내국법인인 을과 태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화물을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외국법인으로서 화물의 수하인인 병은 외국법인 기와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기는 무와 동 적하보험계약에 대한 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화물이 선적된 후, 갑은 을에게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을은 동 선하증권을 병에게 교부하였다.



갑은 해상운송 중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인 정과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해상적하책임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는 “본 보험증권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All questions of liability arising under this policy are to be governed by the laws and customs of England)”는 내용의 영국법 준거조항이 규정되어 있었다.

이후 갑의 화물 운송 중 화물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러자 병은 주위적 원고로서 갑의 책임보험자인 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적하보험의 재보험자인 무는 위 소송에서 예비적 원고로서 정을 상대로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들은 책임보험계약의 당사자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을 상대로 보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근거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¹ 소정의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갑이 무자력상태임을 이유로 한 민법 제404조 소정의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책임보험계약에서 제3자 직접 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므로, 그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¹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개정 1991. 12. 31.>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 12. 31.>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상법 제742조 제2항 소정의 제3자(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임²
- ② 채무인수 및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함
- ③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게 되는 원인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 기초가 되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법률관계인 책임보험계약에 관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는 법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임
- ④ 제3자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와 내용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질 수밖에 없고,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권리의무도 변경됨

2.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결정

가. 국제사법상 연결대상과 연결점 및 성질결정

국제사법상 준거법 결정에 관한 조문들은 연결대상(법적 개념들 또는 범주들)과 연결점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제사법 제28조는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람의 행위능력”은 연결대상에 해당하고, “본국법”은 연결점에 해당한다.³

위와 같은 국제사법 조문들의 구조 때문에 실제 사건에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로부터 다툼이 대상이 된 법적 문제 또는 쟁점을 찾아낸 후, 그러한 법적 문제 또는 쟁점을 국제사법 각 조문들의 연결대상(법적 개념들 또는 범주들)에 포섭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부모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기 미성년인 자식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국제사법 제28조 소정의 연결대상인 “사람의 행위능력”에 포섭한 후, 다시 이를 바탕으로 동조항의 연

² 상법 제742조 제2항 소정의 제3자(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금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라는 점은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에서 판시된바 있다.

³ 석광현, “국제사법 해설”, 초판, 박영사, 2013, p. 23

결점인 “그(미성년인 자식)의 본국법”에 의하여 위 분쟁의 준거법을 결정하게 된다.

위와 같이 판단의 대상이 되는 어떤 생활사실(사안), 법률관계, 법적문제 또는 쟁점을 국제사법상의 연결대상에 포섭하는 것을 “성질결정(Characterization, Classification, Qualification)”이라고 부른다.⁴

국제사법에는 위와 같은 성질결정을 함에 있어서의 준거법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때문에 법정지법설, 준거법설, 비교법설, 국제사법 자체설⁵, 기능적(또는 목적론적) 성질결정론⁶, 단계적 성질결정론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나. 국제사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법적문제 또는 쟁점에 대한 준거법 결정의 기준 -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국제사법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모든 법적문제들 또는 쟁점들을 포섭할 수 있도록 모든 연결대상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연하게도, 다툼의 대상이 된 법적 문제 또는 쟁점을 포섭할 수 있는 연결대상이 국제사법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국제사법 분야의 학자들은 구(舊)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舊) 국제사법”) 제8조(현행 국제사법 제21조), 제26조(현행 국제사법 제46조) 등을 근거로 국제사법이 소위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closest connection)을 국제사법의 대원칙이자 지도원리로서 도입하였고,⁷ 따라서 국제사법의 모든 준거법 연결원칙은 당해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법을 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해왔다.⁸ 그리고 이러한 입장의 당연한 귀결로서 국제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관계 또는 쟁점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보았다.⁹

대법원도 국제사법상 연결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준거법 결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구(舊) 국제사법 제26조 등을 근거로 거론하면서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⁴ 상계서, p. 24

⁵ 신창섭, “국제사법”, 제2판, 세창출판사, p. 62; 김연외, “국제사법”, 제3판, 법문사, p. 128

⁶ 석광현, 전계서, p. 30, 31

⁷ 석광현, 전계서, p. 255, p. 271

⁸ 석광현, 전계서, p. 152

⁹ 예를 들어, 석광현, 전계서 p. 271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¹⁰).

참고적으로, 유럽 공동체(EC)의 국제사법에 관한 조약인 로마 협약(Rome Convention ;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1980)에서도 우리나라의 국제사법과 마찬가지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closest connection)에 준거법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칙(fundamental rule)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 연합의 로마 I 규정(Rome I Regulation (Regulation (EC) No 593/2008)하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준거법 결정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단지 준거법을 결정하는 여러 대등한 규칙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다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¹¹

다.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 요소와 기준

(1) 국제사법상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 요소와 기준

국제사법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무엇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¹²

이와 관련해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역적 요소 뿐만 아니라 종교, 문화, 민족, 사회, 경제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Second) of Conflict of Laws)에서 준거법의 선택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열거하고 있는 ① 국가간 및 주(州)간 질서의 필요 ② 법정지의

¹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므4133 판결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외국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당사자가 그 준거법을 선택한 바가 없고, 「국제사법」에도 당해 법률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직접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국제사법 제26조 등).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서도 「국제사법」은 달리 정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도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피보전권리는 단지 권리행사의 근거가 될 뿐이고 취소 및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해행위이며,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채무자와 법률행위를 한 수익자 및 이를 기초로 다시 법률관계를 맺은 전득자 등이 가장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거래의 안전과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요소 등을 감안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은 취소대상인 사해행위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이라고 할 것이다.”

¹¹ Franco Ferrari, “Concise Commentary on the Rome I Regulation”, 2nd e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p 92

¹² 국제사법 제정 당시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근거가 되는 요소를 예시할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석광현, 전게서, p. 112

관련 정책, ③ 다른 관련 국가의 정책 및 문제된 섭외적 사안의 해결에 대해서 그들 국가들이 갖는 상대적 이익, ④ 정당한 기대의 보호, ⑤ 특정 법영역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정책, 적용결과의 확정성, 예측가능성 및 통일성, ⑥ 적용될 준거법의 확정과 적용에 있어서의 용이성 등을 거론하는 견해가 있다.¹³

한편, 위와 같은 견해에서도, 구(舊) 국제사법 제8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21조 제1항)¹⁴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동 조항이 국제사법의 준거법지정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장치로서 남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좋은 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실질법적 가치판단의 궤에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¹⁵

(2) 로마 I, II 규정상 “가장 밀접한 관련”의 판단 요소와 기준

유럽 연합의 로마 I 규정(Rome I Regulation (Regulation (EC) No 593/2008)과 로마 II 규정(REGULATION (EC) No 864/2007)에서도 “가장 밀접한 관련(closest connection)”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았다. 다만, 로마 I 규정상의 밀접한 관련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해당 사안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¹⁶ 특히 로마 I 규정의 제4조 소정의 “가장 밀접한 관련(closest connection)”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된다.¹⁷

- 양 당사자들의 거소(habitual residence) : 강한 관련(Strong Connection),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임¹⁸
- 물건의 소재지 : 강한 관련(Strong Connection), 부동산에 관한 물권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지 : 약한 관련(Weak Connection), 다만 경매에 의한 물품 매매 또는 자원 거래에서 체결된 계약인 경우에는 강한 관련(String Connection)

¹³ 신창섭, 전게서, p. 36; 김연 외, 전게서, p. 33;

¹⁴ 구(舊) 국제사법 제8조(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¹⁵ 신창섭, 전게서, p. 127

¹⁶ Franco Ferrari, 전게서, p. 135

¹⁷ 전게서, pp. 131 ~ 136

¹⁸ Galf-Peter Calliess 외, “Rome Regulations Commentary”, 3rd Edition, Wolters Kluwer, 2020, p.132에서도 동일한 의견이다.

- 이행지 : 약한 관련(Weak Connection), 로마 협약 이전에 많은 국가들의 국제사법상 계약의 이행지는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었으나, 로마 협약과 로마 I 규정에서는 그 중요도가 떨어졌으며, 특히 로마 I 규정에서는 고용계약의 경우를 제외하면 독립적인 연결점이 아님¹⁹
- 공공기관의 행위지 : 공공기관(행정부, 법원 등)이 계약의 체결과정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이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을 형성하는데 참여한 경우, 계약체결지 보다는 공공기관의 행위지를 더 중요하게 고려. 다만, 공공기관의 참여가 계약의 형식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당사자들의 서면의 진정성을 공증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행위지는 고려하지 않음
- 실질법(substantive law)은 밀접한 관련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어떤 법이 계약을 무효로 간주하는지 여부는 준거법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특히 Favor negotii principle²⁰은 준거법 결정시 무시되어야 함
-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 준거법 결정시 고려되어야 함. 그러나 대립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경우, 양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상충하기 마련이므로, 거의 비중이 부여되지 않음. 당사자들이 국제재판관할에 대해서 선택한 경우, 이러한 선택이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므로, 준거법 결정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
- 등기국, 등록국 또는 선적국 : 등기, 등록의 대상이 되는 항공기, 기차, 선박의 경우, 등기국, 등록국 또는 선적국은 밀접한 관련을 시사하는 요소임. 그러나 단순한 사용계약의 경우에도 등기국, 등록국 또는 선적국이 중요한 요소인지는 의문임
- 계약의 언어 : 강한 관련을 생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많은 요소들 중의 하나로서 고려될 수는 있음
- 국가 : 국가가 당사자인 계약의 경우,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이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와 사인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함
- 당사자들의 국적 : 그 자체로 강한 관련을 생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준거법 결정

¹⁹ 반면에 Galf-Peter Calliess 외, 전게서, p. 132에서는 로마 I 규정하에서도 이행지는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²⁰ Favor negotii principle 이라 함은 계약의 형식적, 실질적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의 원칙으로,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전체를 근거로 하고 있다.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임. 양 당사자가 동일한 국적을 갖는 경우에도, 국적은 준거법 결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음. 당사자들이 동일한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국적 국가보다는, 당사자들이 동일한 거소를 갖고 있는 경우, 해당 거소의 국가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합의된 화폐 : 강한 관련을 생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함
- 중재조항 또는 국제재판관할조항 : 당사자들에 의한 묵시적인 준거법 선택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지만,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음²¹
-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들도 고려될 수 있음.²²

한편, 위와 같은 요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요소만으로는 로마 I 규정 제4조의 제4항, 또는 제4조의 제3항 소정의 가장 밀접한 관련이 인정될 수 없다.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국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법이 될 것이다. 반면에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다른 국가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단지 얼마나 많은 요소들이 가리키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떤 연결이 강한 연결 또는 약한 연결을 생성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요소가 강한 연결을 생성하는 경우, 다수의 약한 연결을 생성하는 요소들에 우선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방법을 “질적 접근방법(qualitative approach)”이라고 한다.²³

또한, 로마 I 규정 제4조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밀접한 관련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마 I 규정 제4조의 가장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²⁴

²¹ 반면에 Graf-Peter Calliess 외, 전게서, p. 132

²² Mario Giuliano & Paul Lagarde,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1980, p. 21; 로마 협약이 발표됨과 동시에 로마 협약의 제정과정 및 로마 협약의 각 조문에 대한 설명을 담은 동 보고서에서는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도 가장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법원은 계약체결 이후의 사정은 고려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Collins 외,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15th edition, Sweet & Maxwell, 2012, Paragraph 32-036; Amin Rasheed Shipping Corp v Kuwait Insurance Co [1984] A.C. 50, 69). 로마 I 규정에는 제4조 제1항에서 거소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가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²³ Franco Ferrari, 전게서, p. 135

²⁴ Graf-Peter Calliess 외, 전게서, p.131; Franco Ferrari, 전게서, p. 136

(3) 영국 보통법상 “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

로마 협약이나 로마 I 규정이 채택되기 이전,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상으로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선택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 해당 거래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관련(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을 가진 법체계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결정되었다.²⁵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관련(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은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심사, 판단되었으며, 계약의 해석이 아닌 법의 적용과 관련된 것이었다.²⁶

이때 어떤 국가가 거래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관련을 갖고 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려되어야 할 요소의 유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예를 들어, 계약체결지, 이행지, 거소, 당사자들의 영업장소, 계약의 성격과 대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과거 “거래와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도는 이행지에 부여되어왔지만, 이제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일 뿐이라고 한다.²⁷

한편, 과거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고, 묵시적인 준거법 합의도 인정될 수 없는 경우, 영국법이 로마 I 규정 제4조 제5항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결정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²⁸

²⁵ Collins 외, “DICEY, MORRIS AND COLLINS ON THE CONFLICT OF LAWS”, 15th edition, Sweet & Maxwell, 2012, Paragraph 32-006; Mario Giuliano & Paul Lagarde,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 1980, p. 19

²⁶ 이를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연결의 객관적 심사(The objective test of “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라고 부른다.; Collins 외, 전게서, Paragraph 32-007; 과거에는 영국 보통법상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관련(closest and most real connection)”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떠한 법을 준거법으로 의도 했었을 것인지”가 기준이 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야만 하고, 이때 어떤 하나의 요소가 결정적일 수는 없으며, 광범위한 요소들, 예를 들어, 당사자의 거소 또는 영업소, 이행지, 계약체결지, 계약의 성격과 주제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고 설명되었다(대표적으로 Mario Giuliano & Paul Lagarde, 전계 보고서, p. 19). 그러나 *Bonython v Commonwealth of Australia* [1951] A.C. 201 (PC); *Whitworth Street Estates (Manchester) Ltd v James Miller and Partners Ltd* [1970] A.C. 583; *Amin Rasheed Shipping Corp v Kuwait Insurance Co* [1984] A.C. 50. 판결들 이후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가장 진정한 관련”을 찾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Collins 외, 전게서, paragraph 32-073)

²⁷ Collins 외, 전게서, paragraph 32-073

²⁸ 전게서, paragraph 32-073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the principle of the closest connection)은 국제사법의 대원칙이자 지도원리로서 도입되었고, 국제사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법률관계 또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직접 준거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국제사법상으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의 정의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요소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결국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²⁹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가진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 학자들은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공허한 공식(an empty formula)”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하며,³⁰ 로마 협약에서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과 관련하여 법원에 과도한 재량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친다는 지적으로 인해서, 로마 I 규정에서는 하에서는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이 준거법 결정의 근본적인 원칙이라기 보다는 단지 준거법을 결정하는 여러 대등한 규칙들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다른 규칙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으로 그 지위가 변경되었다.³¹

한편, “가장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의 제반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영국법상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

가. the Law Commission과 the Scottish Law Commission의 보고서³²

(1) 1984년 the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87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ltative Memorandum No. 62 : Choice of Law in Tort and Delict

위 보고서(이하 “1984년 보고서”)는 우선 제3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는 절차적인

²⁹ 석광현, 전게서, p.112

³⁰ Collins 외, 전게서, paragraph 32-073, 각주 281

³¹ Franco Ferrari, 전게서, p 92

³² the Law Commission과 the Scottish Law Commission은 영국의 the Law Commissions Act 1965에 의해서 설립된 독립기구들로서, 각각 지속적으로 잉글랜드, 웨일즈의 법과 스코틀랜드의 법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의 변경을 권고하여, 법을 단순화, 현대화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978년 Brussels Group of Experts가 계약상의 의무에 한하여 협약(추후 로마 협약이 됨)을 초안하기로 하고, 비계약상의 의무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하자, 1979년 the Law Commission과 the Scottish Law Commission은 비계약상의 의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영국 대표단에게 조언을 하고, 당시의 영국 저축법을 평가하고 개혁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불법행위(Tort and Delict)에 있어서의 영국의 저축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고, 1984년 함께 하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³³ 그러면서 1984년 보고서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도 아니고 계약상의 청구도 아니지만, 그 성격상 유사계약적(quasi-contractual)이라고 보아 계약에 관한 저촉법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고, 전통적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문법에 의해 인정된 청구로서 불법행위에 관한 저촉법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하였다.³⁴

나아가 1984년 보고서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에 계약에 관한 저촉법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책임보험계약이 없다면 직접청구도 존재할 수 없음
- 직접청구의 법적 성격은 성문법에 의한 계약상 책임의 확장임
- 직접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적용될 저촉법 규칙이 보험계약의 해석의 문제로서 사안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직접청구의 가능여부에 대한 준거법으로 결정하는 것이 선호됨(양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선호된다는 의미)
-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이외의 법하에서의 책임에 노출되게 되는데, 그러한 책임은 보험자의 기대에 상응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의 준거법에서 인정되는 책임보다 무거운 책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험자에게 불공정함³⁵

그리고 위 보고서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에 불법행위에 관한 저촉법 규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불법행위가 없다면 직접청구도 존재할 수 없음
- 직접청구는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관한 저촉법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의 보고서로 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³³ the Law Commission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87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ltative Memorandum No. 62 Private International Law : Choice of Law in Tort and Delict”, the Stationery office, 1984, p.244

³⁴ the Law Commission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전제 보고서, p.244

³⁵ 다만, 위 보고서는 보험의 담보(Coverage)가 확장되는 범역에서 피보험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잠재적인 직접청구의 위험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보험자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the Law Commission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전제 보고서, p.246)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보험의 담보(Coverage)가 확장되는 법역에서 피보험자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러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는 잠재적인 직접청구의 위험에 대해서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항상 보험자에게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음
- 불법행위를 규율하는 저촉법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지법 이외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될 수 있고, 단지 직접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을 결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해당 준거법하에서 실질법상으로 직접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다시 검토되어야 하므로 보험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음

나아가 1984년 보고서는 직접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지,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될 것인지는 해결불가능한 딜레마(insoluble dilemma)이고, 어떠한 독단적인 해결방안(dogmatic solution)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면서, 잠정적인 견해로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직접청구에 대해서 적용되어 한다는 결론을 내리되, 이러한 결론에 대해서 실무가들과 학자들의 의견개진을 요청하였다.

한편, 1984년 보고서는 헤이그 교통사고 협약(The Hague Traffic Accidents Convention)에서 채택된,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상에 직접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허용하는 방안”도 소개하였다. 특히 1984년 보고서는 헤이그 교통사고 협약에서 불법행위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 모두가 직접청구를 허용하는 경우, 직접청구에 대해서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소개하면서도, 이보다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³⁶

(2) 1990년 the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195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ltative Memorandum No. 129 : Choice of Law in Tort and Delict³⁷

1990년 보고서는 1984년 보고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한 후, 1984년 보고서의 잠

³⁶ 이러한 입장이 로마 II 규정에 반영되어, 로마 II 규정 제18조에서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상에 직접청구가 허용되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³⁷ 1984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동 보고서에 대해서 학자들과 실무가들, 법률관련 기관과 단체들에서 50개의 서면 의견들을 표명하였고, the Law Commission과 the Scottish Law Commission은 이러한 의견들을 고려하면서 1984년 보고서에서 다룬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1990년 그 결과를 담아 재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후 1990년 보고서를 참고하여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가 입법되었다.

정적인 결론과는 달리, 청구인(피해자)과 책임보험자와의 사이에 계약관계(privity of contract)가 없으므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계약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990년 보고서는 청구인(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주된 청구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라면, 청구인(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청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990년 보고서는 보험계약이 없었다면 직접청구 또한 존재할 수 없기는 하지만, 불법행위가 없었다라도 직접청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의 준거법 이외의 법이 적용될 경우, 보험자는 그가 예상하였던 것보다 더 큰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잠재적인 직접청구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³⁸ 1990년 보고서의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어떤 법역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 보다는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직접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른 법역들의 법원들이 이 쟁점을 성질결정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불법행위적인 문제로 판단되기도 하였고,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계약적인 문제로 판단되기도 하였으며, 법정지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절차적인 문제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1984년 보고서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론의 여지없는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청구인이 가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기 보다는 가해자의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함으로써 자신없는 결론을 내렸다. (1984년 보고서에 대해) 자문의견을 제공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고려하면, 우리는 1984년 보고서에서 채택된 자신없는 결론이 반드시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청구인은 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청구는 진정한 의미의 계약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불법행위가 보험자에 의해서 청구인들에 대해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은 맞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된 구제수단은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소송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소송은 계약에 기한 청구하기 보다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에 더욱 가깝다. 만약 실제 가해자에 대한 청구인의 소송이 불법행위적인 것이라면, 보험자에 대한 청구도 불법행위 소송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보험계약이 없었다면 직접청구도 존재할 수 없지만,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직접청구 또한 존재할 수 없다. 보험계약의 준거법 이외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보험자가 예상하였고 영업을 수행하면서 기초로 삼았을 책임보다 더욱 큰 책임에 보험자를 노출시킬 것이지만, 담보가 확장되는 법역의 법하에서 피보험자의 잠재적인 책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직접 책임 또한 보험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³⁹

³⁸ the Law Commission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the Law Commission Working Paper No. 195 & the Scottish Law Commission Consultative Memorandum No. 129 Private International Law : Choice of Law in Tort and Delict”, the Stationery office, 1990, pp.26 ~ 27

³⁹ "In some jurisdictions, it is possible for the injured party to bring a direct action against the wrongdoer's insurer rather than the wrongdoer himself. There are a number of ways in which the courts of other jurisdictions have characterised this issue. It has been seen as a tortious question, governed by the applicable law in tort; as a contractual question governed by the proper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and as a procedural question governed by the lex fori. The Consultation Paper tentatively concluded that the question whether the claimant can sue the wrongdoer's insurer rather than the wrongdoer himself was a matter for the proper law of

한편, 1990년 보고서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와 관련하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보고된 케이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실질적인 중요성이 거의 없고, 따라서 이 사안은 입법을 하기 보다는 실제 케이스가 법원에 회부되면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⁴⁰

나. Through Transport Mutual v. New India Assurance Co. Ltd. 케이스⁴¹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 케이스로서, 핀란드에서 발생한 화물 손상 사고에 관하여 화주의 보험자가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핀란드의 1994년 보험계약법 제67조 소정의 직접청구권(Injured person'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general liability insurance)에 근거하여 핀란드 법원에 운송인의 상호보험자(P&I Club)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핀란드의 보험계약법에서는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도산한 경우, 피해자가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운송인의 상호보험자의 규칙(Rule)⁴²에는 영국법 준거법 조항과 런던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호보험의 구성원(운송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후에야 상호보험

the wrongdoer's insurance contract rather than a question to be decided by the applicable law in tort or delict, although it also said that there did not appear to be an unanswerable argument in favour of any approach. In the light of the views expressed by consultants, we are not convinced that the tentative conclusion adopted in the Consultation Paper is necessarily the ideal one. The direct action is not in any real sense contractual, since the claimant is not suing a party with whom he is in privity of contract. It is true that neither has a wrong been perpetrated by the insurer on the claimant. However, the action against the wrongdoer's insurer may be more akin to a claim in tort than contract, since what would normally be the claimant's primary remedy would be a tortious action against the wrongdoer. If the claimant's action against the actual wrongdoer would be tortious, an action against the insurer may be better seen as an extension of this tortious action. Although the direct action cannot exist in the absence of the contract of insurance, neither would the direct action exist in the absence of any wrongdoing. While to apply a law other than the law of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expose the insurer to a liability greater than he contemplated, nevertheless, depending on where the insurer carries on his activities, his expectations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include not only the potential liability of the insured under the law of that jurisdiction to which cover extends, but also any potential direct liability. We have recommended that the matter should not be included in implementing legislation. The issue is of hardly any practical importance, there being no reported case in England or Scotland. We feel that the matter can be left to the courts to decide if called upon to do so."

⁴⁰ 전계 보고서, p. 27

⁴¹ Through Transport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Eurasia) Ltd. V. New India Assurance Co. Ltd. (The "Hari Bhum") [2005] 1 Lloyd's Rep. 67.

⁴² 운송인들의 상호보험은 운송인들이 구성한 일종의 단체이기 때문에 상호보험의 담보범위, 면책사항 등을 규정한 것을 규칙(rule)이라고 하며, 이는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항(pay to be paid clause)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상호 보험자는 영국 법원에 화주의 보험자는 상호보험 규칙내의 런던 중재조항에 구속되며, 따라서 핀란드에서의 소송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상호보험자의 청구의 근거는 “화주의 보험자가 핀란드 법원에 제기한 청구는 실정법에 따라서 화주가 상호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양수의 혜택을 취득하려는 것이고, 따라서 상호보험 규칙상의 중재조항에 구속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화주의 보험자는 “화주의 권리에서 파생된 청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핀란드 보험계약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독립적인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하려는 것이므로 상호보험 규칙상의 중재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High Court)의 Moore-Bick 판사는 다음과 같은 판결이유를 제시하면서, 화주의 보험자의 직접청구는 영국 저축법의 성질결정(characterization)상 계약상의 청구에 해당하며, 따라서 화주의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상호보험자를 상대로 런던에서 중재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화주의 보험자의 핀란드에서의 소송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보다 구체적인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화주의 보험자가 핀란드에서 핀란드의 법에 의하여 청구를 하고 있지만, 영국법원에서 화주의 보험자의 청구의 성격은 영국법의 성질결정(characterization) 관련 원칙들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함
- 성질결정은 청구원인이나 청구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개별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임
- 만약 핀란드 보험계약법 제67조가 청구인에게 보험계약으로부터 독립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핀란드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권리로서 영국법에서는 유사한 권리가 없고, 따라서 핀란드법이 적용되어야 함
- 그런데 핀란드 보험계약법 제67조는 청구인에게 양도의 형식을 갖출 필요도 없이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를 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러한 법의 작용에 의하여 청구인이 획득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조건들에 따라서 보험계약을 집행할 권리임
- 핀란드법에서는 직접청구권을 제한하는 보험계약상의 조항들을 무효화하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계약상의 조항들을 집행하는 것이 청구인의 직접청구권의 핵심적 성격이라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보험계약의 준거법은 영국법이므로, 따라서 보험계약을 무효화하는 핀란드법은 영국

에서는 인정될 수 없음

- 따라서 화주의 보험자가 상호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하려면,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 영국 법원은 화주의 보험자에게 핀란드에서의 소송을 금지할 수 있음
- 핀란드 법원이 영국 법원의 소송금지명령(anti-suit injunction)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영국 법원은 소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영국법원의 소송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핀란드 법원이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더라도, EC Judgement Regulation⁴³하에서 핀란드 법원의 판결은 공서양속(public policy)에 반하는 것으로서 영국내에서 집행될 수 없음

영국 항소법원은 위와 같은 1심 법원의 판결 중 화주의 보험자의 직접청구가 보험계약상의 조항들을 집행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화주의 보험자가 핀란드에서 직접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보험계약의 위반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고, 영국 법원이 소송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고 보아, 1심 법원의 판결 중 소송금지명령은 해제(discharge)하였다.⁴⁴

다. Maher v Groupama Grand Est 케이스⁴⁵

원고들은 프랑스에서 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던 승합차 운전자의 과실로 승합차와 충돌하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의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상해를 입었다. 그러자 원고들은 승합차 운전자의 책임보험자(프랑스 보험사)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승합차의 운전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은 프랑스 법이었다.

위 케이스에서 문제된 사고는 로마 II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5. 7. 29. 발생하였기 때문

⁴³ Council Regulation (EC) No 44/2001 of 22 December 2000 on jurisdiction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judgments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⁴⁴ 영국 항소법원은 핀란드가 EC Judgement Regulation의 가입국인 점, 핀란드법상으로는 핀란드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점, 핀란드법상 화주의 보험자가 핀란드 보험계약법에 따라서 상호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보험계약법 위반이 아닌 점, 핀란드 법원에서의 소송이 소송남용이거나 억압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서 영국법원이 소송금지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영국 항소법원의 이 부분 판단에도 매우 중요한 법리들과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상세히 다루지 않겠다.

⁴⁵ Gerard Maher And Daniela Maher V Groupama Grand Est [2009] EWCA Civ 1191

에 로마 II 규정은 적용될 수 없었다.

책임보험자는 영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나 프랑스법상 원고들이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 및 책임보험자의 법적책임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⁴⁶ 그 때문에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손해배상금의 산정이 영국법에 의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랑스 법에 의해야 하는지 여부와 손해배상금에 대한 판결선고전 이자는 영국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프랑스 법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⁴⁷만이 문제되었다.

특히 영국 저축법상으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절차적인 문제(procedural matter)라고 보아 법정지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Harding v Wealands [2006] UKHL 32).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피해자들)이 불법행위자인 운전자를 상대로 영국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영국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을 것이다.⁴⁸ 반면에 영국법상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당연히게도 계약의 준거법에 의해서 산정되어야 한다.

위 케이스에서 책임보험자는 원고들의 직접청구가 보험계약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의 직접청구는 계약적인 청구의 성질을 가지므로,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프랑스법에 따라서 손해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원고들은 직접청구가 여러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는 다수의 쟁점들을 야기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인 the High Court의 Blair 판사⁴⁹는 the Law Commission과 the Scottish Law Commission의 1990년 보고서를 인용하면서도, 다소 결론을 달리하여 청구인들이 가해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밖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1990년 보고서의 결론

⁴⁶ Directive 2000/26/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May 2000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insurance against civil liability in respect of the use of motor vehicle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s 73/239/EEC and 88/357/EEC (Fourth motor insurance Directive)에 따르면, EC, EU의 회원국들은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된 민사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의무가 있었다. 이에 영국은 the European Communities (Rights against Insurers) Regulations 2002를 입법하였고, 동법은 영국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었으며, 회원국 국민들도 동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법이 입법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다투지 않았고, 원고들은 프랑스의 법상 부여되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위 소송을 제기하였다.

⁴⁷ 영국 저축법상 판결 선고후 이자는 법정지법인 영국법에 의해서 규율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기 때문에(Dicey & Morris, 전게서, paragraph 7-106), 쟁점이 되지 않았다.

⁴⁸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피해자들)이 불법행위자인 운전자를 상대로 영국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영국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이 산정되었을 것이다. 위 사건의 1심 법원도 동일하게 보았다(Maher v Groupama Grand Est. [2009] EWHC 38 (QB) paragraph 13)

⁴⁹ 영국 73대 총리로서 1997년 ~ 2007년 영국 총리로 재임하였던 토니 블레어 총리의 형이다.

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가 영국법원에 제기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의 산정과 같이 절차적인 것으로서 법정지인 영국법이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Blair 판사는 판결 선고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체의 문제로 보아,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제11조에 따라서, 즉 불법행위의 준거법인 프랑스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Blair 판사는 이자율은 법정지법인 영국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하지만, 다만, 영국의 Supreme Court Act 제35A조에서 이자율에 관하여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영국 또는 프랑스의 적정한 이자율을 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의 Moore-bick 판사⁵⁰는 영국법원의 다수의 관례들에 의하면 영국의 저축법은 어떤 청구 전체에 대해서 성질결정을 하기 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별로 성질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Macmillan Ltd v Bishopsgate Investment Trust Plc (No. 3)⁵¹ 케이스에서의 Auld 판사의 다음과 같은 판시를 인용하였다.

“성질결정(characterization or classification)은 법정지법에 의해서 규율된다. 그러나 무엇에 대한 성질결정인가? 이미 설명한 바에 따라서 적절한 접근방법은 청구의 형식을 넘어서 법정지법에 따라서 청구와 방어에 의해서 제기된 진정한 쟁점 또는 쟁점들을 식별하는 것이다. 이는 관련 법원칙의 성질결정에 있어서 병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과 법원칙의 성질결정(이들의 근거에 깔린 원칙은 경쟁하는 법체계들 사이에서 예양(comity)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은 법정지의 국내법 또는 경쟁하는 법체계의 특별한 관념들 또는 구별들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어쩌면 다른 법체계에는 상응하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쟁점은 너무 협소하게 정의하여 다른 법체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법정지 법하의 특별한 국내 규칙이 적용되도록 해서도 안 된다.”⁵²

⁵⁰ Moore-bick 판사는 Through Transport Mutual v. New India Assurance Co. Ltd. 케이스의 1심을 담당했던 판사였으나, 이후 항소법원으로 옮겨 Maher v Groupama Grand Est 케이스의 항소심을 담당하였다.

⁵¹ Macmillan Ltd v Bishopsgate Investment Trust Plc (No. 3) [1996] 1 WLR 387

⁵² "Subject to what I shall say in a moment, characterisation or classification is governed by the lex fori. But characterisation or classification of what? It follows from what I have said that the proper approach is to look beyond the formulation of the claim and to identify according to the lex fori the true issue or issues thrown up by the claim and defence. This requires a parallel exercise in classification of the relevant rule of law. However, classification of an issue and rule of law for this purpose, the underlying principle of which is to strive for comity between competing legal systems, should not be constrained by particular notions or distinctions of the domestic law of the lex fori, or that of the competing system of law, which may have no counterpart in the other's system. Nor should the issue be defined too narrowly so that it

“나는 [1995] 1 W.L.R. 978, 988 판례에서 판사가 말하였던 바에 동의한다.: 영국 저축법하에서 준거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의 성질결정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확정해야 한다. 모든 청구는 그것이 손해배상으로 또는 다른 것으로 성질결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법체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많은 쟁점들이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원은 각 쟁점을 살펴보고, 분쟁의 해결책에 적용하기 위해서 준거법을 결정해야 한다”.⁵³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Moore-bick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상해를 입은 사람의 운전자의 보험자에 대한 모든 청구는 다양한 쟁점들을 야기할 수 있다 : 원고 스스로도 사고에 대해서 부분적인 책임이 있을 경우의 운전자의 책임, 보험자가 운전자에게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보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 이러한 모든 쟁점들이 반드시 동일한 법체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2005년 7월 독일 보험자에 의해 담보되는 네덜란드 운전자가 스트라스부르크(Strassburg)⁵⁴에서 영국인 통행자를 충격하였는데, 그 결과 상해를 입은 통행자에 의해서 영국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불법행위지법으로서 프랑스법에 의해서 규율될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하에서 보험자의 책임과 관련된 쟁점은 계약의 준거법인 독일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상해를 입은 통행자가 보험자에 대해서 직접청구권을 갖는지 여부는 독일법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⁵⁵

attracts a particular domestic rule under the lex fori which may not be applicable under the other system"

⁵³ "I agree with the judge when he said [1995] 1 W.L.R. 978, 988: "In order to ascertain the applicable law under English conflict of laws, it is not sufficient to characterise the nature of the claim: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question at issue." Any claim, whether it be a claim that can be characterised as restitutionary or otherwise, may involve a number of issues which may have to be decided according to different systems of law.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look at each issue and to decide the appropriate law to apply to the resolution of that dispute."

⁵⁴ 스트라스부르크(Strassburg)는 그 도시명이 독일 도시처럼 들리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에 있는 도시로, 프랑스 도시이다.

⁵⁵ "Any claim by an injured person against the driver's insurer may raise a variety of issues: there may be issues relating to the driver's liability, the extent to which the claimant was himself partly to blame for what happened and whether the insurer is liable to indemnify the driver, in whole or in part. One would not necessarily expect all these to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the same system of law. For example, if, in July 2005 a Dutch motorist insured by a German insurer had run down a British pedestrian in Strasbourg, resulting in an action in this country by the injured pedestrian against the insurer, one would expect issues relating to the driver's liability to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French law as the law of the place where the tort was committed (see section 11(1)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95), but issues relating to the insurer's liability under the policy of insurance to be determined by reference to German law as the proper law of the contract. For the same reason

그러면서 Moor-bick 판사는 원고들이 그들의 손해에 대해서 얼마나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는 주로 사고에 대해서 책임있는 사람에 대한 청구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하고, 이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야기된 것이 명확하므로, 손해배상금의 산정은 법정지인 영국의 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Moor-bick 판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의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서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나아가 보험자의 책임유무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책임유무에 관해서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불법행위에 기한 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절차적인 것으로 보아 법정지인 영국의 법에 따라야 한다.

4. 일본에서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에 대한 논의

가. 일본법상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일본에서는 2008년 상법으로부터 보험법이 분리되어 제정되었고, 보험법은 201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상법 개정 이전까지는 상법 제629조 이하에서 책임보험을 비롯한 손해보험계약을 규율하였는데, 동법하에서 손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서,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사고(즉, 피보험자에 의한 가해 사고)의 피해자에게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허용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2008년 보험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직접청구권은 도입되지 않았고, 그 대신 동법 제22조 제1항에 모든 책임보험에 대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선취특권(先取特權)을 인정하였다.⁵⁶ 선취특권이란 법률상 정해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German law would also determine whether the injured pedestrian had a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the insurer.”

⁵⁶ (責任保險契約についての先取特權)

第二十二條

1 責任保險契約の被保險者に対して当該責任保險契約の保險事故に係る損害賠償請求權を有する者は、保險給付を請求する權利について先取特權を有する。

2 被保險者は、前項の損害賠償請求權に係る債務について弁済をした金額又は当該損害賠償請求權を有する者の承諾があつた金額の限度においてのみ、保險者に対して保險給付を請求する權利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

[번역]

(책임보험계약에 대한 선취특권)

제22조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해당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는 보험급부를 청구할 권리에 대하여 선취특권을 가진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바, 우리나라법에서 유사한 권리를 찾는다면,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을 들 수 있다.

또한, 개별 법률에서 직접청구권을 규정한 경우로는, 조약을 일본 국내법화한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법(船舶油濁損害賠償保障法)을 제외하면, 2008년 개정전 상법의 특별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가 유일하게 피해자가 자동차 운전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해 가지는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보험 등의 합의대행 보험상품⁵⁷의 보험약관에서는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었으며, 보험법의 분리 및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보험약관상의 직접청구권은 변경되지 않았다.⁵⁸

나. 일본 학자들의 준거법에 대한 논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다룬 일본 법원의 판례는 찾을 수 없었고, 일본 학자들의 논문들에서도 일본 법원의 판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한편, 일본의 학설들은 책임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성질결정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학설들 중에는 법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을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는 강제보험에 있어서의 직접청구권과 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임의보험에서의 직접청구권을 구별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강제보험의 공보험적 성격에 주목하여, 강제보험에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이 없다고 하면서 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서도, 그리고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으로서도 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이 적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임의보험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피해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의해서 입은 손해의 전보를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확보하려는 의도하에 법이 특별한 정책적 견지에 근거해 마련된 규정이므로...그것은 ...불법행위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인정된 불법행위 채권 그 자체의 효력으로서 파악할

피보험자는 전항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를 한 금액 또는 해당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의 승낙이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부를 청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⁵⁷ 일본에서 “합의대행(일본에서는 ‘示談代行’이라고 한다) 보험상품”이란 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야기한 경우, 책임보험자의 담당직원이나 변호사가 피보험자 본인을 대신해서 상대방 피해자와 합의 교섭을 실시하는 보험상품을 의미한다.

⁵⁸ 吉澤卓哉, “保險先取特權の準拠法 - 直接請求權の準拠法をてがかりに”, 損害保険研究/81卷 (2019) 2号, p.51

수 있다」라고 하면서 불법행위 준거법에 의해서 규율된다고 한다.⁵⁹

일본의 학설들 중에는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을 구분하지 않고, 책임보험계약의 본질은 피보험자의 손해의 전보이지, 피해자 구제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법률상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는 규정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전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부여하려는 의도하에 특별한 정책적 견지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정이고, 따라서 불법행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정된 불법행위 채권의 효력의 문제로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는 견해도 있다.⁶⁰ 특히 吉澤卓哉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가지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¹

- 일본 최고재판소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직접청구권의 성격에 관해서 '피해자 및 가해자 쌍방의 편리를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서 피해자 측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일정 범위 내에서의 손해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보험금청구권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간주하는 한편,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판시함⁶²
- 일본 최고재판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6조 1항에 근거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보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판시함⁶³
- 직접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⁵⁹ 松岡, "責任保險契約における國際私法問題", 1967, 71-72 頁, 75 頁; 일응 독창적이고 참신한 견해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의 체결이 강제된다고 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모든 사항들 및 관련된 법률관계 전부가 공법적인 사항이 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기 어렵다. 하나의 법률에 근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라고 하여도, 공법적인 요소와 사법적인 요소가 혼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 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는 공법적인 내용으로서 속지주의, 속인주의에 의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약관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라고 하여도 약관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거의 이견이 없다. 이처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공법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약관 전체가 공법적인 사항이 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이치로, 보험계약의 체결의 강제된다고 해도, 공법적인 사항은 보험계약 체결의 강제와 관련된 사항일 뿐이고, 그 밖의 사항들, 특히 보험계약상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들은 사법적인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바로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松岡 박사조차도 나중에는 이러한 견해를 변경하였다.

⁶⁰ 松岡, "國際私法・國際取引法判例研究", 新版, 大阪大学出版会, 2003, 169 頁

⁶¹ 吉澤卓哉, 전계논문, pp. 120 ~ 127

⁶² 最判 昭和39年 5月 12日・民集18 卷 4号 583頁

⁶³ 最判 昭和61年10月 9日・判時1236号 65頁

서 손해배상책임제도의 일부이자, 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채권임

- 직접청구권 제도는 불법행위지의 공익에 관련된 것이므로 공법적 색채를 가지며, 따라서 직접청구권에는 불법행위지법을 적용해야 함
- 직접청구권의 성립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채무의 성립과 연동되어 있어, 직접청구권의 내용은 손해배상채무와 동일한 내용으로서(다만, 보험계약상의 여러 조건들이 적용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률관계와 책임보험자의 책임의 법률관계는 강한 견련성을 가지는데, 이러한 견련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직접청구권임
- 직접청구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이행확보를 위한 제도이므로, 피해자가 전혀 알 수 없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거나 누적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일반적으로 법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에서는 보험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예를 들어 중재계약,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여러 부수 의무 위반에 근거한 제재)의 대부분을 절단하고 있음. 이 점을 중시한다면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보험자에 의한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연대보증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므로 법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을 불법행위로 성질 결정하는 이론적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음
- 불법행위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상거소지나 사업소 소재지에서 발생하는 경우, 직접청구권을 불법행위로 성질결정한다면 피해자 및 가해자 쌍방에 있어서 납득감이 있음
- 상거소지 등 이외의 법역에서 불법행위가 행해진 경우에도, 피해자, 가해자가 해당 법역으로 이동한 것이므로, 상거소지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규율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득감이 있을 것이며, 또한 해당 법역에서의 직접청구권의 존재 여부나 조건 등을 사전에 조사해 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성이 확보됨. 반면에 피해자가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함
- 동일한 법역에서 복수의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각 가해자의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라서 직접청구권의 가부가 달라진다면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 명의 가해자에 의해 하나의 불법행위가 행해졌는데, 복수의 보험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보상한도별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그리고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직접청구를 하는 경우, 보험자의 이행의무는 보험계약에 근거한다는 점, 일반적으로 법정 대위는 원인관계의 준거법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점, 책임보험이 없다면 직접청구권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⁶⁴

5.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사법 제정시 독일 민법시행법과 스위스 국제사법에서 불법행위와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가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⁶⁵

학설상으로는 직접청구를 하는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성질결정에 따라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라면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르나, 그것이 불법행위에 따른 권리라면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따른다는 견해가 있다.⁶⁶ 또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계약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법의 접점에 있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우회적인 청구를 피하도록 하고, 나아가 보험계약 자체에 결함이 있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직접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국제사법의 해석론으로서도 로마II 규정 제18조, 독일 민법시행법 제40조 제4항이나 스위스 국제사법 제141조처럼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가 이를 인정하면 직접 청구를 인정함으로써, 성질결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선택적 연결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⁶⁷

판례상으로는 선박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선박의 소유자가 가해선박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선체멸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였는데, 가해선박의 소유자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보험계약에서는 직접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외국법 준거법 약정이 존재하였던 사안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36981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03. 3. 14. 선고 2002나46524 판결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여 제3자가 직접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상의 준거법 약정이 유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준거법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涉外사법 제45조에 따라서 위 사건의 준거법은 선박의 충돌지인 한국

⁶⁴ 相澤吉晴, “國際保險契約をめぐる一つの問題—被害者の直接請求權の準拠法—”, 東北法学 6号, 1982, 3頁, 21-28頁; 櫻田嘉章=道垣内正人編, “注釈國際私法 第1卷”, 有斐閣, 2011, 458頁; 増田史子, “判批: 漁協が船主(香港法人)の責任保險者(ロシア法人)に対して船骸撤去にかかる保険金の直接支払を求めた事案(消極)”, 早稲田法学 91 卷2号, 2016, 67頁

⁶⁵ 석광현, 전계서, p. 415

⁶⁶ 박영준, “책임보험의 제3자 직접청구권(直接請求權)에 관한 고찰. (考察) —법적 성질과 관련문제점을 중심으로—”, 상사법연구 28권 4호 (2010), p. 223;

⁶⁷ 석광현, 전계서 p.416

법이므로 피해선박의 소유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서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선박충돌 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7046 판결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 한다고 판시하면서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에서는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의 매우 오랜 논의나 우리나라에서의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직접청구권의 성질결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법원은 “제3자가 외국의 법률이 준거법인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국제사법에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함으로써 직접청구권을 둘러싼 오랜 논의를 무색하게 하였다.

대신 대법원은 직접청구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국가의 법을 찾아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판단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상법 제742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직접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라고 판단하고는, 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이전되는 채무·채권의 준거법에 의하도록 한 구(舊)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매우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⁶⁸

-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손해배상채무의 법정 병존적 인수로 파악하면서 손해배상채무의 준거법이 아닌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음
-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은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본, 대법원 판결

⁶⁸ 석광현, “한국국제사법학회 30년의 회고와 과제: 국제재판관할법의 정립을 넘어 준거법규정의 개정을 향하여”, 국제사법연구 제29권 제1호, 2023, pp. 112 ~ 11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에도 부합하지 않음⁶⁹

- 만일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의 행사요건이 구비되었다면,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을 텐데,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은 법정 채권양도의 결과이지, 병존적 채무인수의 결과는 아님.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직접청구권이 결국 보험금청구권의 법정양도의 효과를 가지게 되는 셈이 되는데, 이는 너무 경직된 성질결정임

살피건대, 직접청구권에 대한 성질결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국제사법에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하고는 다시 밀접한 관련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재차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살펴서, 그것도 우리나라의 상법 제742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들어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고려한 것은 국제사법의 적용에 있어서 성질결정과 밀접한 관련의 판단이라고 하는 구분되는 개념과 과정을 혼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상충된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대법원 판결처럼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로 보아 구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를 참작하려 한다면, 애초에 직접청구권을 채무의 인수로 성질결정한 후, 구 국제사법 제34조 또는 제35조를 적용하는 것이 체계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더 정합적인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또한, 구 국제사법 제34조에 의하면 채무의 인수인과 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인수된 채무의 준거법에 의한다. 이를 위 직접청구권에 적용하면, 채무자는 가해자가 되고, 인수인은 책임보험자가 되며, 채권자는 피해자가 되고, 인수된 채무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이 된다. 따라서 만약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을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로 보아 국제사법 제34조를 적용한다면, 직접청구의 가능여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가지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국제사법 제34조는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불법행위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위 대법원 판결처럼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구 국제사법 제34조는 법률에 의해 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그러한 채권의 이전은 구 채권자와 신채권자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것으로서, 동 조항을 손해배상채무의 병

⁶⁹ 구 국제사법 제34조와 관련하여 학설은 면책적 채무인수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으나(석광현, 전제 논문, p. 114), 대법원은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에서 구 국제사법 제34조는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존적 인수에 대해서까지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밀접한 관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거소, 이행지, 불법행위지 등의 형식적인 요소들을 고려하되, 실질법적인 요소들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상법 제742조 제2항 소정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판시를 밀접한 관련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또한, 현행 국제사법의 체계에 부합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이 아닌, 불법행위지인 외국의 법률에 근거한 직접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어떻게 성질결정을 하고 밀접한 관련에 대해서 심사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 국내외의 다수의 학자들이 검토해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확한 정답을 찾기 어렵다고 고백할 정도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완전무결한 해답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대해서 보다 나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국제사법상 성질결정이나 밀접한 관련의 심사와 판단의 기준, 방법에 대해서 보다 나은 답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국제사법에 근간과 본질에 접근하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끝>

토론문

발표문에 대한 지정토론문

이상협 변호사
(김 · 장 법률사무소)

“책임보험자에 대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대한 토론문

이 상 협¹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나42599 판결(이하 ‘대상 판결’이라고 합니다)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개진하여 주신 발표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사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도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을 둘러싼 비교법적 검토와 대상 판결과 관련한 고민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발표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제사법 상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논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도 완전무결한 해석론을 제시하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책임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국가의 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기에,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국제사법 학계와 실무계의 몫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에 있어서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한지는 저희 모두가 다시 한 번 고민하여 볼 필요가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대상 판결을 둘러싼 몇몇 쟁점에 대하여 발표자님의 고견과 보충 설명을 청하고자 합니다.

1. 대상 판결이 성질결정에 의하려 하지 않고 준거법을 지정하였는지 여부

일정한 사건에서 국제사법을 적용하여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로부터 다툼의 대상이 된 법적 문제 또는 쟁점을 찾아낸 후 이를 국제사법의 각 조문들의 연결대상에 포섭시키는 성질결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만약 성질

¹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결정의 결과 연결대상이 국제사법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을 비롯한 여러 기준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발표자님께서 발표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논의를 상세하게 정리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에서는 대상 판결이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의 논의나 우리나라에서의 기존 논의와는 달리 직접청구권의 성질결정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대법원이 대상 판결의 판결이유에서 문제되는 사실관계 내지 쟁점에 관한 성질결정을 한 후 이를 국제사법의 각 조문에 포섭되는지를 살펴보는 순서로 이유를 실시하지 않고 곧바로 국제사법에 직접청구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대상 판결의 이유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에서는 준거법 결정을 위한 논의의 전제로서 국제사법에 직접청구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음을 언급한 후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한 성질을 채무의 병존적 인수로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35조에의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이루어진 대상 판결의 논증 과정에 일부 매끄럽지 않은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² 구 국제사법 제34조, 제35조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통한 해결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대상 판결이 내린 결론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직접청구권에 대한 성질결정에 의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발표자님의 고견 내지 보완 설명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보다 본질적인 문제로서 발표자님께서 발표문 27페이지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하여 국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직접청구권이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는지 하는 식의 실체법적 성질결정 논의를 통하여 국제사법상 성질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섭외사건에서 직접청구권이 쟁점

² 대상 판결에서 구 국제사법 제 34 조 및 제 35 조의 기준은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언급한 뒤 위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직접청구권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대한 검토로 넘어간 점에서 논리적으로 다소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되는 경우, 어느 국가의 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는 가장 핵심적으로는 직접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이 적용되느냐의 문제이고, 직접청구권의 존재는 각국의 보험법에서 확정되는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처럼 여기서 성질결정의 문제는 결국 “보험법상 인정하는 직접청구권의 존재”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는 접근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고민을 기반으로 대상 판결과 같은 결론에 이른 것이 아닌가도 추측이 됩니다.

2. 구 국제사법 제34조 또는 제35조에 관하여

대상 판결은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같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인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관계라고 본 후 구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기준이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의 경우에도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 국제사법 제34조를 직접청구권의 법률관계에 적용하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 여부는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갖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국제사법 제34조는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준거법이 아닌 피해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발표자님의 지적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결³에 따르면 구 국제사법 제34조(현행 국제사법 제54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하므로 병존적 채무인수의 준거법을 인수되는 채무의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점에서 대상 판결의 이유가 현 시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나아가 구 국제사법 제35조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에 의한 ‘채무의 인수’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보기에 부족해 보입니다.

결국 위와 같이 구 국제사법 제34조 또는 제35조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고려함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대상 판결은 구 국제사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³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 다 201662 판결.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그 의미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지는 향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으로 생각됩니다.⁴

아울러 만약 구 국제사법 제34조가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결정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인수되는 채무에 적용되는 준거법이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격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험금청구권 내지 피보험자가 가진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험자가 책임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내용 역시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 과거와 달리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도 3년으로 늘어나 소멸시효 기간에 있어서는 사실상 불법행위청구권설과 사이에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금청구권으로 보는 견해⁵도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관한 발표자님의 고견을 청하고자 합니다.

3. 선지급(pay to be paid) 항변

주지하시다시피, 외국법이 준거법인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논의는 해상 분야에 있어 P&I club의 선지급(pay to be paid) 항변을 어떻게 처리할지와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 보입니다. 일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5. 30. 선고 2012가합7046 판결은 선박충돌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와 해운조합을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영국의 제3자 권리법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허용되지 않음을

⁴ 이러한 점에서 최성수 교수님께서 대상 판결에서 국제사법 제 34 조 등을 참작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하지 않아서 불명확성을 야기하였다는 비판하신 점도 경청할 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성수, “책임보험계약상 제 3 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검토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 다 42599 판결을 중심으로 -“, 「동아법학」 제 13 권 제 4 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145-147 면 참조.

⁵ 한창완,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일감법학」 제 39 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67 면 등 참조.

확인한 뒤, 가사 영국법에 따라 직접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더라도 영국 판례 (The Fanti)⁶에 비추어 피고들의 선지급 항변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⁷

이러한 점에서 대상 판결과 같이 책임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을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보험자 측에서 선지급 항변이 유효하게 제기한다면 결과적으로 직접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대상 판결에 대한 유력한 견해와 같이 불법행위지법인 대한민국 법률이 준거법이 된다고 볼 경우 상법 제 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과 선지급 조항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관하여 발표자님께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4. 입법론적 해결

발표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신 영국의 1984년 보고서, 1990년 보고서 그리고 관련 영국 판결들이나 그 외의 국내외에서의 논의를 살펴보아도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통일적이고도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해석론을 제시하기에는 논리적, 법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선택적 연결설에 착안하여 불법행위의 준거법 또는 보험계약의 준거법 중 어느 하나가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면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를 인정하는 조항을 두는 방안⁸을 제시하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자님께서 직접청구권의 준거법을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복안이 있으신지 고견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5. 기타 논의 사항

대상 판결은 채권자대위권이 적용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파기후 환송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통상 누적적 준거법 적용(피보전권리의

⁶ Firma C-Trade S. A. v Newcastle Protection and Indemnity Association

⁷ 실제로 대상 판결의 사안에서도 문제된 계약 조항이 전형적인 선지급 조항과 차이가 있어 선지급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⁸ 한창완, 전계논문, 279-280 면 참조.

준거법과 대위대상 채권의 준거법의 누적 적용)이 논의되는데, 이 사건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채권자취소권 판결(2013므4133)로 인해 누적적 적용이 아니라 대위대상 채권의 준거법 즉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으로 단일 적용이 되어 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고, 만일 누적적 준거법이라고 하면 직접청구권의 경우와 채권자대위의 경우가 구별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다른 차원에서 보험자대위권의 준거법의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보험자대위에서 특히 원고를 누구로 할 것인지가 준거법의 문제, 절차법/실체법 구분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논의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이 함께 논의되면 좋겠다는 짧은 의견을 드립니다.